

2005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

의안 번호	11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2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【교 환】

- 구소유 가회동 11-53과 서울시소유 원서동 21번지 주차장을 교환하는 것으로 차액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보상받으며, 토지의 모양이 주차구획 4면을 설치할 수 있어 구유지(3면)보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여 교환하고자 함.

3. 관리계획(취득및처분)(안) : 별첨

4. 관계법규

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5. 예산조치(교환) 없음

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(2005년도 총괄표)

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 고
			건수	면적	금 액	건수	면적	금 액	건수	면적	금 액	
취득	계	토지 건물 기타				1	82.60	131,334	1	82.60	131,334	
	1. 매 입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취득	토지 건물 기타				1	82.60	131,334	1	82.60	131,334	
	3. 기타취득 (기부채납)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처분	계	토지 건물 기타				1	97.90	174,262	1	97.90	174,262	
	1. 매 각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	2. 교환으로 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1	97.90	174,262	1	97.90	174,262	
	3. 기타처분	토지 건물 기타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										

2005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

특별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	교환대상 면적	추정가액 (공시지가)	교환시기	교환사유	교환대상자 성명·주소	비 고
	구분	지목	소재지	면적						
1건	처분 취득		가회동11-53 원서동 21	97.9 82.6	97.9 82.6	174,262 131,334	2005.12			
계	토 지	처분 취득	주차장 대지	가회동11-53 원서동 21	97.9 82.6	97.9 82.6	174,262 131,334	2005.12	북촌길·계동길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와 관련 구유지에 설치된 지상기기(변압기, 개폐기) 이전요구 민원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서울시에서 부지교환 요청	서울특별시장
	건 물	처분 취득								
	기 타	처분 취득								